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749)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사회복지서비스 부담비용 특별소득공제 신설(이종배의원안) ..	2

I. 개요

1.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74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21.

(3) 회 부 일 : 2024. 11.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보험료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도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서비스 부담비용 특별소득공제 신설(이종배의원안)

현 행	개정안
☐ 특별소득공제(제52조)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신 설>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비용 특별소득공제 신설 ☐ (현행과 같음) ☐ <u>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u>

* 이종배의원안 2024. 11. 21. 제출(의안번호 5749)

☐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보험료, 세대주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음.¹⁾

1)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에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개정안은 이에 더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의미²⁾하는데, 이때 사회복지서비스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³⁾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⁴⁾를 의미하며,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⁵⁾을 의미함.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중략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통상 사회적 약자의 사회서비스 이용빈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 사회서비스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18개 사회서비스 영역⁶⁾ 중 응답 가구 중 60.2%가 1개 영역 이상에서 서비스가 필요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 중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필요한 비용 지원 확대가 18.5%의 비율을 차지하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가고 있고 원활한 서비스 이용 관련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서 의미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동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⁷⁾를 의미하며, 보건의료서

5)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돌봄서비스, 기타 성인 돌봄서비스, 출산지원서비스, 영유아 돌봄서비스, 방과후돌봄서비스등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⁸⁾을 의미함.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는 그 정의상 지나치게 넓은 해석이 가능하여 그 범위의 특징이 곤란한 측면이 있고, 사회서비스별 이용 주체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률이 상이하여, 세액 공제를 위한 집행상의 어려움이 수반 될 수 있음.

둘째, 특정 서비스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상 기(既) 특별소득공제 적용대상임을 감안할 때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추어 2024년 12월 12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설정하였음.⁹⁾ 다만, 개정안과 같이 사회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8)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10100>, 보건복지부

고 관련 비용이 경감되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¹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비용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셋째,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33%에 달하는 면세자의 경우 개정안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회서비스 이용가구의 30.6%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비용을 지출하는 가구는 69.4%로 확인됨.¹¹⁾ 이는 본 개정안의 도입을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가구가 면세점 이하 저소득 가구인 경우에는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문 의 처
02)6788-5158

1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11) 2023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